

문서확인번호 1159-3043-5237-6500

발행번호 제2-210-2020-135911호

#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( 전화번호 1301 )

분류기호 및  
문서번호 사건

2020. 6. 2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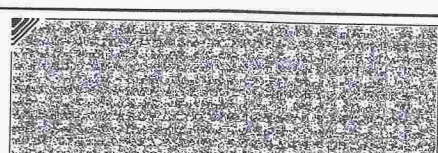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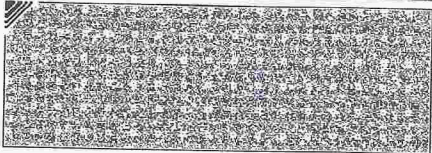
수 신 김명호 귀하 발 신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제 목 불기소이유고지



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① 사 건 번 호	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0형제38723호	
② 고 소 인 성 명	김명호	
피 고 의 자 소 인	③ 성 명	성명불상
	④ 주민등록번호	0000000*****
⑤ 죄 명	가.사문서위조	
⑥ 처 분 검 사	윤동환	
⑦ 처 분 년 월 일	2020. 6. 16.	
⑧ 처 분 요 지	불기소 ( 가-각하 )	
⑨ 불 기 소 이 유	별첨 참조	
⑩ 비 고	mkim1795	



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(www.kics.go.kr)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(1159-3043-5237-6500)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. 다만,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.



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

보	존	제	결
		제	호
			년
공 소 시 효	장기		
	단기		
재 기			

부장검사	차장검사	검사장	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검사 운동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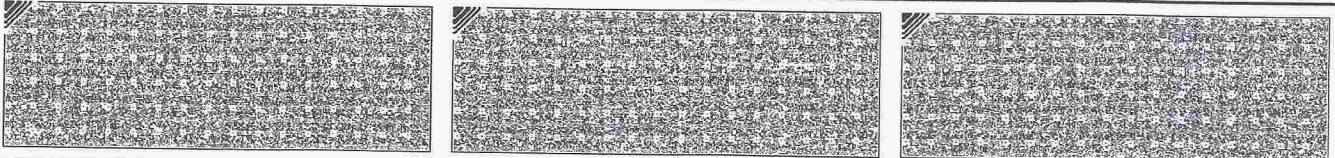
2020년 형제38723호	결 정	2020. 6. 16.	검사	운동환	(인)
피 의 자	죄 명		주 문		
성명불상	사문서위조		각하		

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

부 수 처 분 석방지휘/소재수사지휘/지명수배(통보), 해제	명 령	집 행	인
압 수 물 처 분 가환부대로본환부/제출인환부/피해자환부/보관/폐기/국고귀속	명 령	집 행	인

비 고

집 행	사 건	압 수	결과통지
-----	-----	-----	------



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(www.kics.go.kr)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(1159-3043-5237-6500)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. 다만,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.

## 범죄사실

피의자는 성명불상인 자로,  
피의자는 2019. 2. 17.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사망하지 않아 생존해있는 홍\*유가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사망신고서를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한 뒤, 이를 제시함으로써 홍\*유가 사망자로 등록되게 하도록 만들었다.

## 수사결과 및 의견

### 가. 고발인 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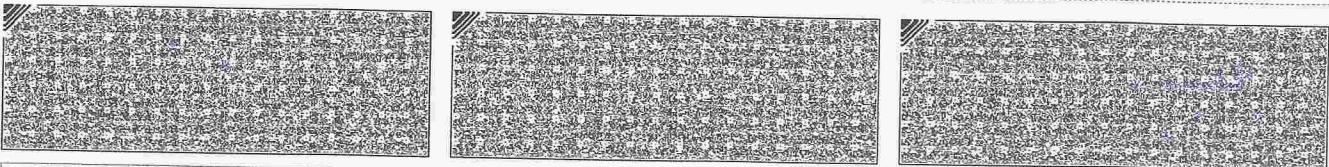
본건 고발인은 전\*신으로부터 전\*신의 모친인 홍\*유가 생존해있음에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부분에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사문서위조로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.

### 나. 사망신고 경위

서울가정법원 2016느단\*\*\*\*\* 심판(2017. 9. 13.)에 따라 홍\*유의 한정후견인으로 법무사 구\*경의 선임이 결정된 사실, 이후 해당 심판이 2018. 12. 21.경 확정되고, 2019. 1. 7.경 서울가정법원에 등기가 접수되어 법무사 구\*경은 홍\*유의 한정후견인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.

또한 2016느단\*\*\*\*\* 심판에 따라, 심판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2개월 내 사건본인인 홍\*유의 재산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어 한정후견인인 구\*경은 2019. 1. 15.경 하나은행 오산중앙지점에서 상속인(후견인)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.

해당 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 보게 되면 사망이 아닌 후견으로 홍\*유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나,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급된 “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접수증을 보게 되면, 발생사유가 사망으로 나타나게 된 점, 이후 2019. 2. 18.경 다시 발생 사유가 사망에서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 점, 금융기관에서는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사실 확인원 및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진술 등으로 보건대, 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착오로 피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신청되어야 할 발생사유가 사망으로 입력된 것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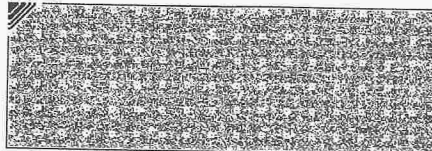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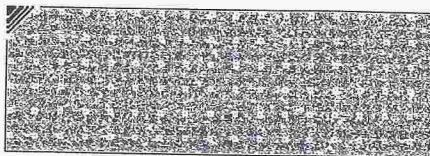


로 판단된다.

다. 의견

결국, 본건 홍\*유가 사망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의 범죄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, 금융기관의 단순 착오에 따라 사망처리가 된 것으로,

본건 성명불상 피의자의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각하 의견임.



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(www.kics.go.kr)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(1159-3043-5237-6500)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. 다만,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.